###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원격근무 운영지침

제정 2021. 8. 24.

- 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.) 직원의 안전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원격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원격근무와 관련하여 법령, 단체협약 또는 그밖에 진흥워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원격근무"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원격으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.
- 2. "선택형 원격근무"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(발열 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의심자 및 임산부, 만성질환자(당뇨병, 심부전, 천식, 만성폐쇄성 질환, 신부전, 암 등), 어린이집, 학교 등의 휴원 또는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가 있는 직원이 신청하는 원격근무를 말한다.
- 3. "교대형 원격근무"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전 직원 대상 원격근무를 말한다.
- 제4조(기본원칙) ① 진흥원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격근무를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진흥원은 원격근무로 인해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.
  - ③ 진흥원은 원격근무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단, 원격근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④ 진흥원은 원격근무자가 원격근무로 인해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⑤ 진흥원은 원격근무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  - ⑥ 진흥원은 필요시 별도의 원격근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5조(대상업무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원격근무 실시대상으로 한다.
  - 1.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로서 단위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
  - 2.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원격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  - 3.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(해당 업무를 원격 근무로 수행할 때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)
  - 4.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
  - 5.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, 해당업무 수행으로 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6조(실시인원) ① 선택형 원격근무 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다.
  - ② 교대형 원격근무 인원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팀별 인원의 일정비율로 한다.
- 제7조(원격근무의 신청) ① 선택형 원격근무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[별지 제1호]의 선택형 원격근무

- 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원격근무 시작 전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② 교대형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경우, 직위자는 소속부서 신청내역을 [별지 제2호]의 교대형 원격근무 신청서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원격근무 시작 전일까지 인사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원격근무 시작일에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**제8조(원격근무의 숭인)** ① 승인권자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격근무를 승인하여야 한다.
  - ② 다수의 직원이 원격근무를 신청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임산부, 가족돌봄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직원이 우선적으로 원격근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  - ③ 원격근무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  - 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해 승인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원격근무의 승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
  - ⑤ 제1항의 승인권자는 신청직원의 직상위 직위자로하며, 그 직위는 직제규칙 [별표 제3호]의 직위자 분류표를 따른다.
- **제9조(원격근무자의 보안관리)** ① 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원격근무자는 이중인증방식을 적용한 가상사설망을 통해서만 그룹웨어에 접속해야 한다.
  - ③ 원격근무자는 보안담당관이 원격근무용 단말기(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)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원격근무자의 복무관리 등) ① 원격근무자는 비 원격근무 때와 동일하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② 원격근무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일 출·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원격근무자의 직상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- 1. 이메일, 메신저, 전화 등을 통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
  - 2. 그룹웨어 로그인 및 로그아웃 시각을 이용한 근태관리 및 일일업무보고
  - 3. 전화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한 원격근무자의 근무상황 확인 등
  - ④ 원격근무자는 업무수행 중, 직상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다.
  - ⑤ 원격근무자는 근무 중 비상 ·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상위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.
  - ⑥ 업무회의, 업무지시, 업무수행평가, 교육,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, 원격근무자의 직상위자는 사전에 원격근무자와 협의하여 원격근무를 중단할 수 있다.
  - ⑦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 종료 후에 [별지 제3호]의 일일업무보고서를 직상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안전에 관한 사항) ① 원격근무자는 원격근무를 위한 업무공간을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

적절히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
② 진홍원은 원격근무자가 과도한 작업량이나 장시간 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업무량 및 업무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주의환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# 부 칙<2021. 8. 24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선택형 원격근무 신청서

결	신청자	팀 장	단 장	본부장
2				
재				

소	속										
성	명										
수행	기간	Ļ	년	월	일	~	년	월	일		
신청	사유										
근무	계획										

## 교대형 원격근무 신청서

결	팀 장	단 장	본부장
2			
재			

소속 : <u>본부 단 팀</u> (총원\_명)

									<u>_</u>	( <u>o</u> ਜ
No	팀명	사번	성명	근무지	대성	기간 중	원격근무	일(해당일	일에 ㅇ	표시)
110				_ , ,						
	서울청사·판교		근무자 수							
서울			원 대비 크지 스 비오							
		원격근무자 수 비율 원격근무자 수 총원 대비								
_	그 외									
		I	무자 수 비율							

## 일일업무보고서

소 속	
성 명	
근무유형	□ 교대형 □ 선택형
근무일자	년 월 일
업무내역	